



메타버스교육센터규정

제정일	2022. 8. 1
개정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메타버스교육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메타버스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센터의 역할) 센터는 메타버스 XR기반 교육환경 구축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응용한 VR, AR, MR을 포함한 XR 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제공하고 평가와 환류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시대에 교수학습지원의 필요를 충족하며 관련 대학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콘텐츠 개발 및 지원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업) 센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메타버스 XR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
2. 메타버스 XR기반 교육 관련 기술 연구 및 연구회 운영
3. 메타버스 XR기반 교육 협의체 구축을 통한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
4. 메타버스 XR기반 콘텐츠 제작 관련 재정지원사업 운영
5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

제 4조 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책임교수,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5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콘텐츠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메타버스 체험 플래닛(MEP : Metaverse Experience Planet)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 6조 (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